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. 8. 8 선고 2024가단52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총청 담당변호사 김민서

변 론 종 결 2024. 7. 11.

판 결 선 고 2024. 8. 8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2,4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C의 채권자인데, 소외 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2,480,000원을 송금하였는데,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.

2. 판 단

가.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공동경제생활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금원을 송금받는 것을 증여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나. 원고의 일상가사 연대책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위 조항은 부부 일방이 가사에 필요한 일상적인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는 부부 중 다른 일방도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일 뿐, 이를 근거로 부부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1인이 생활비 등으로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,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3. 결 론

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숙미